



정문호
본회 전문위원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실무적 점검 · 준비사항(I)

본고는 주주총회 준비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업무적 이해와 도움을 주기 위해 2회 걸쳐 게재할 예정임. (편집자註)

I 개요

정기주주총회는, 1년간 사업실적을 보고·승인받고 그밖에 경영진을 선임하거나 정관변경 등을 통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 개최가 예고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회의다.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여야 하는 총회로서, 대부분 정관에 기준일이나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정해져 있고, 재무제표 승인, 배당결정 등 그 안건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제 12월 결산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되고 있다. 정기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회사의 여러 부서가 관여하게 되므로, 유기적 협력과 종합적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주주총회관련 적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업무수행과정 중 야기될 수 있는 시행착오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사전에 각 업무분야의 주주총회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주총회는 회의 목적사항을 정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즉 주주총회에서 어떤 사항을 결의해야 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정하고 목적사항별로 실무적으로 준비할 사항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후 공시할 사항과 의결권사항, 소집에 필요한 사항, 개최당일 준비할 사항, 총회종료후 해야 할 사항 등을 사전 점검해야 할 것

이며, 유기적이고 종합적 업무협력관계를 위한 업무분장과 체크리스트, 일정표 작성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상장회사에서 실무 담당자들이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목적사항 점검

- 회의의 목적사항은, 상법 또는 특별법에 규정이 있거나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있으며, 이는 크게 보고사항과 결의사항으로 구분된다. 주주에게 통지된 회의의 목적사항만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어 통지·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결의할 수 없다.
-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보고사항 및 결의사항과 함께, 그밖에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특별히 결의·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들 사항에 대한 세세한 법률적 검토와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다.

(1) 결산재무제표 관련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은 정기주주총회의 필수적 결의

사항이다(상법 제449조 제1항). 상법상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말한다(상법 제447조).

- 그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의하면 재무제표에는 재무상대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말하는데(외감법 제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 재무제표의 주주총회 승인은 상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재무제표를 승인받아야 한다.
- 이사는 결산재무제표를 작성, 이사회 승인을 얻어 감사(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총회 6주전에 제출하고(상법 제447조~제447조의3, 외감법 제7조 및 동시행령제6조),
- 상장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은 이사에 감사보고서를 주총일 1주간 전까지 제출토록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12⑥, 외감법 제8조). 즉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및 외부감사는 총회 1주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 결산재무제표의 작성은 회사의 규모나 업종, 전산화 정도 등에 따라 작성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대부분 결산재무제표의 작성시기에 따라 주주총회 일정이 정해지고 있으므로, 일정조정을 위한 회계부서와의 사전확인과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주식배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배당의 예정내용(주식의 종류, 배당율 등)을 이사회결의를 거쳐 당해 사업연도말 10일전까지 신고·공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 상법상 주식배당은 정기주총에서 결정함이 원칙이나 정기주총에서 주식배당이 결정공시될 경우 주가의 왜곡,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당해 사업연도의 주식배당정책을 조기에 예고·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실무자는 주식배당여부를 사업연도말 10일전(12월21일)에 필히 확인하여 주식배당정책 추진

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상장회사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이하가 아니면 이익배당 총액을 전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의 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3). 또한 10% 이상 주식배당을 공시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대상이 된다. 주식배당의 결정은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하여 최종 확정되며 승인과정에서 기공시한 주식배당 결의내용이 변경된 경우 기공시사항의 변경사항(취소포함)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정관에 관한 사항

- 회사의 경영정책은 주주총회에서의 정관변경을 통하여 표출된다고 할 수 있다.
- 정관은 다수주주의 동의를 얻어 회사의 사업목적 및 기업지배구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내 최고의 규범이다. 아울러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상장회사 관련 각종 제도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관에 정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상호변경, 신규사업 진출, 새로운 주식·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공고방법 변경, 기업지배구조의 개편(감사위원회 설치) 등 회사의 주요 경영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반드시 정관내용을 검토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관내용을 변경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정관에 새롭게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상장회사표준정관을 참조하여 비교·검토하는 것이 편리하다. 각 회사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정관변경의 경우는 회사정책과 관련법규를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개개의 정관조항에 관련된 상세한 법률 검토사항을 본고에서 모두 설명하기는 매우 방대하여 곤란하므로, 사안에 따라 기존의 해설 책자를 참고하든지 본회의 정관정비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익하다 할 것이다.

- 정관을 변경함으로써(우선주의 발행조건 변경 등) 어느 종류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법 제435조 제1항)

(3) 이사선임 관련사항

-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중요한 결의사항중 하나가 이사선임의 건이다. 이사선임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련된 중요한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이사의 자격과 선임절차는 비교적 엄격하게 법규화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 최근 상법개정으로 이사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세분하여 등기등록 함(상법 제317조)에 따라, 이사 선임시에 각 이사가 구분되어 선임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 특히 사외이사는 일정 결격요건을 법정하고 있으므로, 사외이사후보가 추천되는 경우 우선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에 결격요건이 없는지를 실무적으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는 사전에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상법 제542의5). 만일 이를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상법 제635조의 제1항 제25의2호), 절차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준비가 필요하다.
 - * 대규모상장회사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1/20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외이사 선임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반드시 포함시켜 주주총회에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4) 감사선임 관련사항

- 현행법상 상장회사의 감사제도는 기업규모에 따라 감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기업의 자율적 선택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각 감사제도에 적합한 선임방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실무상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 감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또는 상근 감사위원)는 엄격한 자격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우선 실무적으로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 법적 자격제한요건을 일일이 따져보는 등 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자격검증이 필요하다.
- 감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또는 상근 감사위원)의 선임시에는 의결권행사가 제한된다. 관련법규에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의결권행사 제한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주주총회 선임시 투표지에 의한 표결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비하여 각 주주별 의결권수의 사전계산, 참석주주의 의결권수의 집계 등 총회 당일날 업무가 혼잡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실무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2 제5항). 만일, 이에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상법 제635조)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 최근 상법에서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의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였다(상법 제542조의12).

(5) 기타 결의사항

- 각 회사에서는 장기적 경영목표나 경영전략 수립, 신사업 진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새로운 기관 창설이나 조직개편 등 경영정책 수행과정상 최고의 사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이들 사항이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인지,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결정할 사항인지를 우선 실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해 놓은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으며(상법 제361조), 특별법으로 정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며, 설혹 주주총회에서 위임결의를 하더라도 타 기관에서 결의할 수 없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상법 또는 특별법상의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결의요건과 함께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 보통결의사항

- ① 감사인의 선임(상법 제366조 제3항, 제367조)
- ② 이사감사의 선임(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 ③ 이사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상법 제388조, 제415조)
- ④ 청산인의 선임해임과 그 보수의 결정(상법 제531조, 제539조 제1항, 제542조 제2항, 제388조)
- ⑤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 제1항, 제533조 제1항, 제534조 제5항)
- ⑥ 주식배당(상법 제462조의2 제1항)
- ⑦ 청산중결의 승인(상법 제540조 제1항)
- ⑧ 흡수합병의 합병보고총회(상법 제526조 제1항) - 이사회에 공고로 대신할 수 있음(동조 제3항).
- ⑨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상법 제372조 제1항)

* 특별결의사항

- ① 정관의 변경(상법 제434조)
- ②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상법 제374조)
- ③ 사후설립(상법 제375조)
- ④ 이사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 제415조)
- ⑤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1항)
- ⑥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상법 제417조 제1항)
- ⑦ 주식의 분할(상법 제329조의2)
- ⑧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중요한 사항(상법 제513조 제3항, 제516조의2 제4항)
- ⑨ 회사의 해산(상법 제518조)
- ⑩ 회사의 계속(상법 제519조)
- ⑪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상법 제75조 제2항)
- ⑫ 회사의 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제522조 제1항, 제3항)
- ⑬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물적 분할(상법 제530조의3, 상법 제530조의2)
- ⑭ 주식의 포괄적 이전과 포괄적 교환(상법 제360조의3, 상법 제360조의6)
- ⑮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상법 제343조의2)
- ⑯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상법 제542조의3)

* 특수결의사항

- ① 발기인,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상법 제324조, 제400조, 제415조, 제462조의3, 제542조 제2항) → 총주주의 동의
- ②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상법 제604조 제1항) → 총주주에 의한 총회의 결의

* 특별법상의 결의사항

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

-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 이를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즉 대표이사의 선임(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416조 단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제1항 단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513조 제2항 단

서, 제516조의2 제2항 단서)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음을 상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 그 밖에 명시된 규정이 없더라도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사항이라도 정관에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예 : 일정액 이상의 계약 체결이나 투자 또는 계열회사에 대한 담보 제공이나 채무 보증 등).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 규정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확대한 예는 거의 없는 편이다.

(6) 보고사항

- 주주총회에서의 보고사항은 관련법상 보고가 의무화 되어 있는 회의의 목적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성격으로 보아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서 보고사항과 결의사항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 보고사항은 관련법규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실무적으로는 근거법규를 충분히 이해하여 누락된 내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서는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 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등이 있다.
-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외감법 제10조 제1항).

III 공시사항 점검

- 주주총회 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수적으로 숙

지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이 공시사항이다.

- 주주총회는 결산실적과 배당, 경영진 등 증권시장에서 주가에 예민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므로, 주주총회 준비과정부터 총회결과 사업보고서제출에 이르는 주주총회 전과정에 걸쳐 수시로 발생하는 주요내용을 주주 및 일반투자자에게 적시에 공시토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실무자들은 주주총회 업무단계별로 공시사항을 실무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결산일전 공시사항 점검

-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이 결정되면 그 내용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상장규정 제55조).
- 대부분 회사에서는 정관에 정기주주총회의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결의가 필요없다. 그러나 감독당국에서는 정관규정이 있더라도 기준일 2주전까지 신고토록 하고 있음을 실무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주식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사업연도말 10일전까지 그 예정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정비율이 10% 이상 주식배당을 공시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대상이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결산이사회 관련 공시사항 점검

- 내부결산이 완료되면 보통 이사회에서 이를 확정하고 감사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다. 결산실적은 기업경영에 대한 중대한 평가 지표로서, 당해회사의 주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이므로 내부결산이 확정되면 일정경우 공시토록하고 있다.
- 즉,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를

반기전 내부적으로 결산(가결산)을 확정하게 되면 직전사업연도와 대비하여 손익구조의 변경, 즉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대규모 법인의 경우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사실이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 다만, 급격한 손익구조 변경이 없더라도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을 공정 공시할 수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현금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사유발생일 당일에 시가배당률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감독당국에서는 결산실적 공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시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이사회 일정(또는 내부승인 일정)이 결정되면 회사실적(수정전 재무제표)을 공표한다는 사실을 이사회예정일 3일전까지 미리 예고하고, 또한 당일에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총회소집이사회 관련 공시사항 점검

-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이사회가 개최되는 경우 결의일 당일에 주주총회예정일시, 주총예정장소, 의안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의안 주요내용은 안건별로 요약하여 주요 내용을 기재하고, 이사·사외이사 선임,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 선임, 사업목적 변경 및 집중투표제 도입·폐지안건은 세부내역 서식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 또한, 총회일 2주간 전에 소집통지·공고를 해야 하는 바, 그 내용 중 사업개용 및 참고서류 등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던 것을, 회사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및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하는 방법으로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감사보고서관련 공시사항 점검

-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1주전에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장회사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 당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자본잠식 50%이상,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를 함께 신고)

(5) 주주총회결과 공시사항 점검

- 상장회사는 주주총회결의가 있는 때 사유발생일 당일에 그 결과를 신고하여야 한다. 결의사항은 의안 안건별로 요약하여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이사·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 포함) 세부내역, 사업목적변경 세부내역, 집중투표제 도입·배제 세부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하고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에서 부여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양식으로 별도 공시토록 함을 유의해야 한다.
- 급박한 공시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는 총회결과 공시사항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공시서류를 작성하고 총회결과 내용에 따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주총결과 신고후 업종심사자료를 사업보고서 제출기일까지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주주총회 실무절차

순서	절차 및 신고·보고내용	대상처	비 고	時 限		
				12월결산	3월결산	6월결산
1	주주총회를 위한 이사회 결의 (기준일, 명부폐쇄 등)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2	기준일 설정 또는 명부폐쇄 신고 (정관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소	지체없이 (정관규정 있는 경우 폐쇄일부 2주전까지)			
3	주식배당 신고	거래소	이사회 결의일 당일공시 (사업연도말 10일전까지)	12.21	3.21	6.20
4	주주명부폐쇄 공시 및 기준일 공고	주 주	폐쇄일로부터 2주간전	12.15	3.16	6.15
5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작성					
6	결산실적 공시 사전예고	거래소	결산실적 공시 3일전			
7	결산이사회(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8	결산실적 공시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9	직전년도 대비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30% (대규모법인은15%)이상 변경시	거래소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10	현금배당 결정신고	거래소	배당결의일 당일까지			
11	감사의뢰	감 사 감사인	정기총회일의 6주간전	2. 2	5. 4	8. 3
12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일시, 장소, 안건 등			
13	이사회 결의 공시	거래소	이사회 결의일 당일까지			
14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 경영참고사항등 통지, 공고 또는 홈페이지 및 본·지 점 등 비치)	주 주 감독원 거래소	정기총회일의 2주간전, 대행기관 협의	3. 2	6. 1	8.31
15	감사보고서 수령	이사회	정기총회일의 1주전	3.10	6. 9	9. 8
16	감사보고서 공시	거래소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수령받은 당일까지			
17	제자료준비(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회순 등)					
18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비치·공시	주 주 채권자	정기총회일의 1주간전, 본점 5년, 지점 3년간	3.10	6. 9	9. 8
19	주식분포상황표 제출	거래소	주주총회일전까지 제출			
20	주주총회 개최 및 의사록 작성			3.18	6.17	9.16
21	주주총회 결과공시	거래소	주주총회일 당일까지	3.18	6.17	9.16
22	사외이사 중도퇴임 or 감사, 감사위원회위원 중도퇴임 신고	금융위 거래소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감사퇴임만 거래소 공시)			
23	대차대조표 공고	신문사 등	지체없이(정관 공고방법)			
24	주주총회결과 등기	법 원	총회일로부터 본점 2주 이내, 지점 3주이내			
25	배당금 및 소득세 등 계산	대행사				
26	사업보고서 신고 & 연결재무제표 (자산총액 2조원이상) 신고	금융위	사업년도 종료후 90일내	3.31	6.29	9.28
27	업종 심사자료 제출	거래소	사업보고서 제출시점에 같이 제출			
28	배당금 지급통지 및 지급(주식배당신주 교부)	주 주	주총결의후 1월이내	4.19까지	7.18까지	10.17까지

주) 1. 12월, 3월, 6월결산사의 경우 3월18일, 6월17일, 9월16일에 정기주주총회를 각각 개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2. 상기 시한은 대체로 법정일수보다 1~2일의 여유를 두었음.

